

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

1) 접수기간 : '21. 10. 18.(월) ~ 재원 소진 시까지

- ▶ 재원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 지원
- ▶ 재원 소진 시 접수 마감 (별도 공지)
 - ※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공지의 마감시간 기준 도착(방문 또는 우편) 사업장까지 신청/접수
- ▶ 필요 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
 - ※ [덧붙임1]의 「'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」 참조

2)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▶ 신청방법 : 오프라인(방문 또는 우편), 온라인 신청
- ▶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일체 [붙임2 참조]
 - 오프라인(방문 또는 우편) 주소 : (50635)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
 - 온라인 주소 : 클린사업 홈페이지(<https://clean.kosha.or.kr>)
- ▶ 문의처 :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 ☎ 055-371-7562

3) 지원대상
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)
 - ※ 지원제외대상 :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산재보험 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
 - ※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하고 지급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
 - ※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
(단,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)
 - ※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

4)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

- ▶ 지원금액 : 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
 - ※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자금결정일 기준 연 2회 이내로 제한
 - ※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은 차대번호로 구분, 동일 설비 중복지원 불가
- ▶ 보조비율 및 지원조건
 - (보조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(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)
 - (지원조건)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방호장치는 보조금 지급전까지 안전검사 합격

5) 지원설비

-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
- 기동스위치 잠금장치·표지판(Lock-out, Tag-out)
- 프레스·전단기의 안전장치(광전자식, 양수조작식 안전장치, 확동식 프레스의 경우 클러치 개조 및 일행정 일정지 기구 장착)
- 프레스·전단기 자동화 설비(언코일러, 피더 등)
- 금형교환장치(프레스 및 사출성형기)
- 크레인 안전장치(과부하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, 무선원격제어기,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 등)
- 리프트 안전장치(과부하방지장치 및 방호울 공사)

- 산업용로봇 방호장치(방호울, 안전매트, 라이트커튼, 레이저스캐너, 인터록스위치, 가동허가장치)
-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(취출로봇, 호퍼로더)
- 끼임방지 시설(회전체 방호덮개 공사 등)
-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(전·후방 카메라,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)
 - ※ 지게차 임대업 사업주는 임대업장(출차대기장소 등) 내에서 작업하거나 임차사업장에서 임대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운행·작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 - ※ **지자체 신고(등록세, 취득세)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**
 - (지게차 등록차량의 경우)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
 - (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) 납세자(사업주)가 해당 지게차 관련 세금납부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된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제출
- 추락방지 시설(사다리, 안전대 부착설비, 개구부(채광창 포함) 등 안전덮개, 난간, 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에 한함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에 따른 소음방지시설(소음발생원 밀폐설비,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)
-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(호흡용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환기설비, 긴급구출설비,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등)
-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,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(밀폐설비, 국소배기장치 등)
- 건설기계 (굴착기 및 로더) 충돌재해예방 설비(전·후방 카메라,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)
- 천장크레인(3톤 미만, “설비구조물 불량”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설비의 교체 설치 지원,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에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)
 - ※ 안전인증제도 시행('09.01.01.) 이전에 제작된 것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기둥·벽체 등 건물의 보수·보강비용은 지원 불가
- 소형타워크레인(3톤 미만 무인식) 안전장치(속도제한장치, 정격하중경고·확인장치, 이상경고장치, 풍속계, 영상장치 등)
-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·공정 추락재해 예방설비
-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·공정 설비(고소작업차 임차료, 추락방지망)
-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(컨테이너하우스, 샤워부스, 휴게시설 및 냉·난방시설)
-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(간이칸막이, 비접촉식 체온계, 열화상카메라, 자동손소독기)
-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
-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(안전바, 안전봉)
- 추락예방을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블록

※ 지게차방호장치,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, 코로나19방역품목,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, 채광창안전덮개, 안전블록세트,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는 [덧붙임2]의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참조

순번	업종(소)	점수
41	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	6
42	석유정제품제조업	6
43	특수화물운수업	6
44	빵및과자류제조업	6
45	육상화물취급업	6
46	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	6
47	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	6
48	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	6
49	구역화물운수업	6
50	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	6
51	지류가공제품제조업	5
52	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	5
53	선재제품제조업	5
54	축산업	5
55	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	5
56	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	5
57	직물업	5
58	금속가공기계제조업	5
59	기타금속재료제품제조업	5
60	유리제품가공업	5
61	표백및염색가공업	4
62	기타섬유제품제조업	4
63	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	4
64	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	4
65	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	4
66	방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	4
67	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	4
68	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	4
69	기타식료품제조업	4
70	코팅사업	4
71	건축건설공사	3
72	영림업	3
73	임대업	3
74	소형화물운수업	3
75	목상자,목통류및목용기제조업	3
76	위생및유사서비스업	3
77	전기계측기제조업	3
78	지류제조업	3
79	음식및숙박업	3
80	원동기제조업	3
81	합성수지제조업	2

순번	업종(소)	점수
82	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	2
83	강선건조또는수리업	2
84	열처리사업	2
85	도정및제분업	2
86	유기화학제품제조업	2
87	인쇄업	2
88	골판지및종이용기제조업	2
89	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	2
90	자동차부분품제조업	2
91	택시및경차량운수업	1
92	유리섬유제조업	1
93	창고업	1
94	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	1
95	기타화학제품제조업	1
96	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	1
97	철도차량제조또는수리업	1
98	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	1
99	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	1
100	가정용,사무용,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	1
그 외 업종		0

지원품목별 지원대상 및 조건

구분	지원대상	지원조건
지게차 방호장치	▶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, 소속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행·작업하는 사업장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지자체 신고(등록세, 취득세)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- (지게차 등록차량의 경우) 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- (전동지게차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) 납세자(사업주)가 해당 지게차 관련 세금납부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된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제출
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지원품	▶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배달종사자 및 환경미화원 등 고용사업장 - 타겟업종: 택배업(50110), 퀵서비스업(50111)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90102) 등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휴게실 전용공간이 확보된 사업장 ▶ 컨테이너 설치관련 인허가 사항은 신청사업장에서 반드시 확인 ▶ 건축법, 환경법 등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	▶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, 3밀 작업현장 보유공정 사업장 ▶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, 콜센터, 물류센터, 육가공·식품제조업 사업장 - 콜센터(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(중분류기준)) *901(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), 907(전문·보건·교육·여과관련 서비스업), 000(금융 및 보험업) 중 독립된 장소의 운영 사업장 - 물류센터(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(소분류기준)) *50006(창고업), 5007(기타보관업), 50110(택배업)으로 분류된 사업장 - 육가공·식품 제조업 사업장(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분류한 대상업종(중분류기준)) *200(식품제조업) 중 냉장창고 또는 냉동창고를 보유한 사업장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당 1대 지원 및 체온계와 병행하여 지원(단독지원 불가)
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	▶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▶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고소작업대 전체 보유현황 제출(보조금 지급 희망하는 설비 체크) - 동일 고소작업대에 중복지원 불가 ▶ 지원 후 3년간 사용조건으로 분실, 파손 시 보조금 반납 조건

구분	지원대상	지원조건
채광창 안전덮개/ 안전블록세트	▶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<u>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사업장 중 건설업 등록증(건설산업기본법)을 보유한</u>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 업종 -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·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1]의 종합건설업(5종), 및 전문건설업(29종)등록증 ·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증,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,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,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채광창 안전덮개 : 성능 및 제작기준에 부합한 제품에 한함 ▶ 안전블록 세트 - 안전인증품(안전그네 일체형 : 안전대 + 안전블록)에 한함 - 단일품목 지원한도 1,000만원 적용 -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현장 수당 4EA* 이내 지원 (ex) '20년도 현장수 3개소, '21년도 현장수 2개소 ⇒ 3 × 4EA = 12EA 지원
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설비	▶ 밀폐공간을 보유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▶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<u>밀폐공간 작업 실적이 있는 사업장 중 건설업 등록증(건설산업기본법) 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또는 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</u>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전 업종 - 건설업등록증 인정범위 ·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1]의 종합건설업(5종), 및 전문건설업(29종)등록증 ·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증,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,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, 문화재수리공사업 등록증 -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인정범위 ·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 ※ 지원제외대상 : 전년도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,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(400**) 등	▶ 밀폐공간 작업 실적은 해당연도 도급(하도급) 계약서의 계약내용 상 해당작업이 수행된 실적이 있어야 인정